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자치규약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목 차 》

들어가며	1
1. 공연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2
제1장 용어의 정의	3
제2장 안전관리 및 상해보험	3
제3장 스태프회의	5
제4장 안전교육	5
제5장 셋업 및 철수	7
제6장 리허설	8
제7장 공연	9
제8장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10
제9장 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13
2.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14
제10장 용어의 정의	14
제11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정	14
제12장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과정	16
제13장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사건발생 시 행동지침	17
제14장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사건조사와 처리 방안	18
- 부록1. 유관기관 연락처	20
- 부록2. 성희롱·성폭력 체크리스트	21
- 부록3. 직장 내 괴롭힘 체크리스트	22
- 부록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23
- 부록5. 참고자료	24
나가며	24

들어가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을 창작하고 실연함에 있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연단체(개인)와 함께 이를 적극 실천하고자 다음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 **(존중)** 서로에 대한 존엄성과 존경심을 기반으로 수평적 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하나. **(차별금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국적, 피부색, 혼인 여부, 종교, 경력의 유무 및 정도,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성적지향, 성적체성 등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관련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인권보호)**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자유로운 창작환경에 위계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위해를 끼침을 인지하고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및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나. **(예방교육)** 성·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건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합니다.

하나. **(행동지침 준수)** 성희롱·성폭력은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 규약 내 예방을 위한 과정 및 행동지침을 준수합니다.

하나. **(공동체 책임)** 사건 발생 시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해결방식 제시 및 필요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 **(안전배려의무 이행)** 상해보험 가입과 공연예술 표준계약을 작성함으로써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공연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합니다.

하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공연 특성에 따른 각 파트별 위험요인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안전사항에 대해 상시 소통하면서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하나. **(행동요령 숙지)** 공연 준비에서 철수까지 과정별로 이행해야하는 준수사항과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무대 안전수칙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 상기 내용은 서약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장 이용자(공연자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 준비부터 철수까지의 과정별 준수사항과 비상상황 시 행동요령을 자치규약에 명시하여 안전한 작업 및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정

사전 준비					현장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작성	안전관리 담당협력자 선임	스태프회의 기술사항 협의	상해보험 가입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	현장 안전교육	셋업 안전규정 준수	리허설 안전규정 준수	공연 안전규정 준수	철수 안전규정 준수

안전관리 및 상해보험

안전한 작업 및 공연 진행을 위해 전반적인 무대 기술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무대 안전관련 사항을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스태프회의

안전한 공연장 운영과 창작활동 극대화를 위하여 대관 14일 전 각 파트의 담당자가 사전에 작업 일정, 인력 구성, 도면, 전반적인 무대기술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현장 작업, 공연에 안전관리와 공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전교육

현장 안전교육은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출연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연장별 상이한 구조로 인한 유의사항과 대피로를 안내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셋업 및 철수

각 파트별 사전 공유한 일정대로, 작업 시간을 준수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공연장 무대감독과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현장에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시간 및 작업 내용을 협의하여 작업에 임합니다.

리허설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파트별 기술 사항 확인, 테크니컬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 최종 런스루 등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셋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은 긴장을 놓지 않고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리허설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연

모든 참여창작자와 관객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스태프, 출연자, 관객은 모두 안전한 공연을 즐기기 위하여 함께 다음의 약속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유형 별 행동요령

정전	화재	지진	응급상황
----	----	----	------

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제1장 용어의 정의

제1조 (정의)

1. '안전사고'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에서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작업 및 공연 중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공연장 이용자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비상상황, 심리적·신체적 응급상황, 기술적 문제상황(예측 불가한 기술, 장비문제 포함), 공연 중 돌발 상황 등의 안전사고도 포함합니다.
2. '응급상황'이란 작업·근로 과정에서 의식을 잃거나 골절, 출혈 등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트라우마 발생 등 심리적 응급상황도 포함합니다.
3.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란 무대, 기계, 조명, 음향 등 공연장의 각 파트별 감독으로 공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작업자·출연자의 안전을 관리합니다.
4.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란 연습, 공연환경 및 공연장 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고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사전에 기술사항 협의를 통해 안전을 도모합니다.

제2장 안전관리 및 상해보험

제2조 (안전관리)

1.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 1) 각 공연장 파트 별 감독이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무대기술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파트별(무대, 조명, 음향) 점검 및 기술사항 검토,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장 이용자(스태프 및 출연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공연장 이용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

- 1) 공연단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관기간 내 공연장 상주 인원 중 공연 전반에 대한 기술사항을 알고 있는 1명을 안전관리협력자로 선임하여 무대 기술사항을 논의하고 비상상황 대처계획을 수립합니다.
- 2) 별도의 안전관리협력자 선임이 어려울 시 전반적인 무대 기술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연단체의 무대 감독이 해당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의 세부항목을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3.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의 업무

- 1)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에게 안전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와 공연장 이용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이후 안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 2)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상시 소통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3)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 ① 위험 요소 발견 시 리허설 및 공연 등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 ②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장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 ③ 구급상자와 기본 상비약 구비
- ④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상태 파악 후 즉시 조치(현장 치료, 119 연락 등)
- ⑤ 무대 보강 작업 시 무대 출입 제한
- ⑥ 리허설 및 공연 시 화재발생 및 기계 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품목 파악 후 사용 제한
- ⑦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모든 공연자의 온라인 안전교육수료증 취합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출연자에게 현장 안전교육 실시
- ⑧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안전문제 관련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 조치
- ⑨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각 분야별(무대, 조명, 음향, 영상, 관객안전) 감독 혹은 담당자와 상시 소통하여 체계적 업무 시스템 구축
- ⑩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무대세트 등 공연장 반입 물품에 관한 방염 처리 후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방염 서류를 공연장에 제출하고 공연 특성에 따른 예술단체 구성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구비

제3조 (상해보험)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단체 및 공연자(스태프·출연자)에게 산재보험,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상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2. 공연단체는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와 보상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공연주최측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별 공연 참여 예정 일정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증서는 최소 대관시작일 1일 전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 제출합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 출연자 및 스태프 (기획,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분장, 의상, 소품, 세트설치인력, 장비렌탈팀, 티켓(아르바이트포함), 자원봉사자, 사진촬영인력, 영상촬영인력 등 공연장 현장에서 작업하는 전원)

제4조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단체에게 예술인과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2. 공연단체는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근로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직무불안정성을 예방합니다.
3. 공연단체는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근로자에게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합니다.
4. 공연단체는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합니다.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종류

공연예술 창작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 출연 표준용역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3장 스태프회의

제5조 (스태프회의)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공연단체는 셋업 시작 최소 14일 전 스태프회의를 열고 공연 특성에 따른 각 파트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별 위험 요인을 공유하여 안전교육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무대 안전을 위해 스태프회의 시 논의되어야 할 필수 공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일정표)** 각 파트별 반출·입 일정과 작업일정을 공유하고 충분한 셋업, 리허설, 철수 시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작업일정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대관 발생 여부를 함께 논의합니다.
 - (도면)** 사전에 무대 평면도, 무대 제작도, 조명 배치도를 공유함으로써 공연장 별 공간,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강 작업 필요 여부를 확인하며 이는 작업 일정과도 관련됩니다.
 - (극장 사용 기자재 리스트, 반입 물품 리스트, 장비 사용 계획)** 무대, 조명, 음향의 공연장 보유 기자재와 반입 기자재를 함께 확인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원활한 반출·입을 도모합니다.
 - (무대 상·하부 장치 사용 계획)** 무대, 조명 도면과 함께 상, 하부 장치의 구동 사용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공연장마다 장치별 특성을 사전에 공연단체에게 공유하여 현장에서 장치전환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 (특수효과 관련 사항(물, 불, 분진, 화약, 총포) 등의 사용과 이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기계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효과 관련 사항은 필히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과 공연을 진행합니다.
 - (개축객석 설치 시 객석 설치 규정 및 이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공연장 별 피난대피로를 토대로 객석 설치 규정에 따라 개축객석의 계획을 논의하고 하우스매니저, 티켓마스터와 함께 이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 (공연 스태프 인력 운영 계획)** 인력 운영 계획은 작업일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공유하여 작업일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재해대처계획

특수효과(불꽃, 화약, 화염 등의 화재위험 품목 및 총포), 개축객석 등의 사용 공연의 경우 재해대처계획 작성

▷ 재해대처계획서의 필수 기재 항목

- 공연명, 단체명, 대관단체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대관장소, 대관기간
-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 성명 및 연락처, 공연단체 안전요원 성명 및 연락처, 해당업무
- 특수효과 및 개축객석 사용 예정 항목의 종류 및 수량, 목적, 사용 계획
- 무대 및 객석 도면
 - * 특수효과 장치의 보관 장소 표시 및 공연 시 사용 위치 표시
 - * 개축객석의 객석 수, 크기, 위치 표시
 - * 비상상황 시 피난동선 및 안전요원 배치 표시

제4장 안전교육

제6조 (온라인 안전교육)

-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스태프, 작업자, 출연자 전원)는 사이버 아카데미 안전교육 수료증을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필수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 대상자(=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 출연자 및 스태프 (기획,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분장, 의상, 소품, 세트설치인력, 장비렌탈팀, 티켓(아르바이트포함), 자원봉사자, 사진촬영인력, 영상촬영인력 등 공연장 현장에서 작업하는 전원)

- 1)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홈페이지 : safety.kbrainc.com
- 2) 온라인 안전교육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여 만료 시 재수강하여 제출
- 3) 연출진, 촬영팀, 기획팀을 포함한 스태프는 스태프 및 작업자편 수강하여 제출
- 4) 출연자가 스태프 작업 병행 시 스태프 및 작업자 편, 출연자편 모두 수강하여 제출
- 5) 어린이, 수화언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출연자 및 스태프의 경우 어린이출연자 과정편, 수어가 포함된 출연자편, 수어가 포함된 스태프 및 작업자편을 수강하여 제출
- 6) 수료증 미제출자는 현장에서 준비된 시청각 교육(55분)을 필수로 시청

제7조 (현장 안전교육)

1. 각 파트별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출연자의 경우 리허설 전)에 30분 내에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과 공연장 대피로 및 응급상황 대처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스태프회의, 셋업과정에서 발생한 특이 사항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여 공연 참여자에게 인지시킵니다.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출연자 안전교육 시 공연 특성에 따른 특이사항과 위험요인의 위치를 함께 투어를 통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8조 (현장 안전교육의 내용)

1.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단체 및 작업자에게 무대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규정,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관련사항 및 파트별 준수사항(사고사례 포함)을 교육합니다.
2.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단체 및 공연자에게 행동요령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1)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 2)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공유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경비데스크 좌측벽면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지하로비 중앙 벽면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로비 중앙 벽면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로비 중앙 벽면

- 3)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유형 별 행동요령 안내

3.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단체 및 공연자에게 공연장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1) 공간의 구조 안내 및 대피로 공유
-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투어를 통해 무대 내 위험요인 인지
-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출입동선 및 해당시점 이슈에 대한 공지(감염병 대응 및 방역관리 등)

제5장 셋업 및 철수

제9조 (작업 시 이행되어야 하는 무대 안전수칙 및 규정)

1. 반입 · 반출

- 무대에서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에 허가받습니다.

2. 무대 작업

- 무대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은 공연장 무대감독 및 파트별 담당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무대에서 사용하는 특수효과(화약류, 유류, 가스류, 화재 위험물, 물, 모래, 흙, 밀가루, 분진 재료 등)는 위원회 "특수효과 안전매뉴얼"에 근거하여 승인받고 사용합니다.
 - 분진류(밀가루, 모래, 흙 등 분진, 곡물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는 기계 오작동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 액체류(물, 오일, 페인트 등)의 사용은 하부기계 오작동 또는 주변 기기의 장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 화기류(불, 라이터, 버너, 성냥, 화약류 등)의 사용은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직원 외에는 무대시설물 및 각종 기기 장치에 대한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 사용 중인 오케스트라 피트의 추락 위험구역 내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 공연작업자 및 출연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안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스태프 및 출연자 외에는 무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작화, 용접, 톱질 등 무대 환경 저해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전식, 전기제품의 배관, 배선 등은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 무대 상부 및 무대 하부의 모든 작업 활동은 안전 점검 후 실시하도록 합니다.
- 공연준비작업 시 중식(12:00~13:00) 및 석식시간(17:00~18:00 또는 18:00~19:00)에는 어떠한 작업도 불가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무대작업 시 비래(※ 날아오는 혹은 떨어지는 물건에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를 뜻함) 및 추락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동식사다리(A형)는 안전작업 지침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안전모 착용 지침

① 작업 단계별 안전모 착용

구 분	공 간		
	무대 공간	객석 공간	
무대, 조명, 음향 셋업	필수 착용	씰링 및 2층 발코니 작업 시 : 필수 착용 콘솔부스 내, 상부작업 없음 : 미착용	
리허설	무대세트, 상부 및 포커싱 수정	필수 착용	미착용
	테크니컬 및 드레스 리허설	미착용	미착용
공 연	미착용	미착용	
공연 종료 후 철수	필수 착용	씰링 및 2층 발코니 작업 시 : 필수 착용 콘솔부스 내, 상부작업 없음 : 미착용	

- ② 작업 단계별 안전모 착용은 아래의 예외규정을 적용
 - 객석에서의 작업 및 주차장 하역 작업 시 안전모 필수 착용
 - 상부작업 완료 또는 상부작업이 없을 시 하부작업 때 안전모 미착용(동시작업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8조>

-이동식사다리(A형) 안전작업 지침

- ①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 ②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만 사다리 설치
- ③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 ④ 사다리의 높이가 1.2m~2m일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3.5m일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일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2, 제67조/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 지침>

3. 분장실 사용 및 공간 관리

- 사전 협의된 퍼포먼스 외 공연장 및 분장실에서 취사, 취식, 음주, 흡연은 불가합니다.
-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은 원상복구하고 공연 중 발생하는 무대 쓰레기는 수거 · 반출합니다.

4. 비상 상황 시

-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바로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방송 및 공연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제6장 리허설

제10조 (리허설 시 준수사항)

-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리허설 일정을 공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공연장 및 공연단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합니다.
- 리허설 전 무대 장치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보강합니다.
- 리허설 전 또는 도중 무대, 조명 등 수정 및 보강 시 무대감독은 공연단체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무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리허설 도중 무대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리허설을 중단하고 스태프 및 출연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 관객참여형 공연의 경우, 모의 관객과 함께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이나 사고에 대해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 공연장 무대감독,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하우스매니저와 객석 관련 특이사항 · 진행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합니다.
- 리허설 사진촬영, 영상촬영 시 무대의 특이사항을 사진촬영, 영상촬영팀에게 공유하여 안전하게 리허설 촬영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제7장 공연

제11조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한 준수사항)

1. 무대

- 공연장,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공연 전 무대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사진촬영, 영상촬영을 비롯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공연 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 출연자는 공연 중 다른 출연자나 연출가와 공유하지 않은 대사 혹은 동선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 공연단체 무대 스태프는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 담당자와 통신을 유지합니다.
- 비상상황 시 공연단체 무대 스태프와 관객의 피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연장마다 보유하고 있는 피난 안내방송을 관객 착석 완료 후에 필수로 송출합니다.

- 피난 안내 방송 필수 포함 내용

- ①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②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③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④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⑤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

<공연법 제11조의5 및 시행규칙 제6조의3>

- 청각장애인 출연자, 스태프, 관객을 위해 별도의 문자나 수화언어로 표현된 피난 안내 방송을 제작·송출하거나, 어려울 시 피난 안내 방송에 해당하는 내용의 개별적인 전달 및 사전 안내를 권장합니다.
-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바로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방송 및 공연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 기술적 문제 및 응급상황 등으로 5분 이상 하우스 오픈이 지연될 경우 관객들에게 지연 사유를 정확하게 안내방송으로 공지합니다.
- 기술적(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사고 혹은 비상상황(정전, 화재, 지진, 응급상황 등) 발생 시 공연장 무대감독과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신속히 소통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공연 및 리허설 중단 여부에 대하여 판단 및 결정합니다.
- 공연 및 리허설을 재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연장 이용자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공지합니다.

2. 객석

- 기술적 문제 및 응급상황 등으로 5분 이상 공연 시작이 지연될 경우 관객들에게 지연 사유를 정확하게 안내방송으로 공지합니다.
- 관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 혹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을 때는 공연이 진행되기 전 관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 객석과 로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며 무대감독에게 이를 공유합니다.
- 공연 전 객석이나 로비에 시설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우스매니저에게 즉시 알리며 하우스매니저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수리 가능여부 파악, 좌석판매 여부 확인 후 좌석 변경 등)를 진행합니다.
- 극장 내 기존 설치된 객석이 아닌 별도 형태의 객석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관객 대피동선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전에 극장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합니다.
- 「공연법」 제11조의 5에 따라 공연장 객석 내 모든 통로는 비상대피 통로로 방해물 설치가 불가합니다. 방해물에는 공연용 소품, 조명기, 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등을 포함합니다.
- 극장 로비나 객석 등의 공간에 기존 설치 물품 외 별도의 운영물품 설치나 위치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객동선 및 로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합니다.
- 공연단체는 공연 모니터링을 위해 객석 내 착석이 필요할 경우 공연 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좌석을 지정하고 해당 좌석의 티켓을 소지한 상태로 착석합니다.
- 대관기간동안 공연장 출입 시에는 스태프임을 나타내는 비표를 착용합니다.
- 공연의 연출을 위해 출연자가 무대 외 공간(객석, 로비 등)에서 연기할 경우, 정확한 장면 구현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공연단체 무대 스태프가 반드시 동행합니다.

제8장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제12조 (기본행동수칙)

1. 공연장 이용자는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원이 환자에게 관심을 집중할 경우, 환자와 주변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거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를 제외하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3. 비상상황·안전사고 발생 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즉시 공연 및 리허설을 중단하고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연 및 리허설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아닐 경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공연단체의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협력자가 협의하여 공연 및 리허설 지속 여부를 결정한 후 공연장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5.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트라우마 발생 등 심리적 응급상황 발생 시 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협력자, 환자의 판단 하에 119에 신고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제13조 (비상상황·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1. 정전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1) 정전 발생 시 공연장 및 공연단체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는 무전기로 통신하여 정전 상황에 대해 공유합니다.
- 2)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출연진이 당황하지 않고 분장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하도록 전달합니다.
- 3) 1분 안에 비상발전기 미작동 시 무대감독은 공연단체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하여 침착하고 질서있게 관객, 출연진 및 스태프를 대피시키고 추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 4) 3분 안에 한전 전력 복구 완료 시 무대시스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무대감독과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공연 재개 여부를 협의합니다.
- 5) 3분 안에 한전 전력 복구 불가 시 무대감독은 공연팀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하여 침착하고 질서 있게 관객, 출연진 및 스태프를 대피시키고 추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 6) 최종집결지(마로니에 공원)에서 출연진 및 스태프 명단을 확인합니다.
 - * 대피 중에 전원이 복구되더라도 우선은 끝까지 대피를 완료합니다.

2.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1) 최초 발견자는 즉시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화재 발생을 공유하고 초동대처를 합니다.
 - (불길이 확산되기 전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한 상태 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 2) 초동대처가 불가능할 경우 최초발견자는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를 힘껏 외칩니다.
- 3) 초동대처가 불가능할 경우 공연장 무대감독은 즉시 주변에 있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 * 아르코예술극장 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7
 - * 대학로예술극장 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화재 대피 시 유의사항>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전기 화재의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도체(물, 철판 등) 사용에 유의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문을 이용하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일반용 승강기는 이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 자세를 낮춥니다. (연기보다 낮은 자세)
- 한 손으로는 벽을 짚습니다.
-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집결 장소(마로니에 공원)로 이동하여 공연단체 인원 및 동행을 확인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설명합니다.
- 건물 출입통제 시 재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지진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유의사항>

- LED작업등과 객석등을 꺼고, 무대조명을 소등합니다.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유도합니다.
- 출연진 및 스태프는 분장실로 이동합니다.

- 모든 스태프(팔로우 스팟 룸, 갤러리에 상주하는 스태프 포함)은 본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곳에서 신체를 보호합니다.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모, 방석, 가방, 손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창문이나 기구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 지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합니다.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기상청 지진 정보 알리미)

<진동이 멈춘 후 유의사항>

- 진동이 끝나면 관객, 출연자 및 스태프는 집결지(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 대피 중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대응합니다.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 지진 시 대피장소 : 마로니에 공원
- * 주변 지진옥외 대피장소 : 낙산공원,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

제14조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1.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1) 반응 확인

- ①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 상황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현장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2) 119 신고

- ①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반응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합니다.
- ② 응급의료상담원에게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수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 말합니다.

3) 호흡과 맥박 확인

- ① 신고자는 119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 ②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습니다.
- ③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심정지 환자로 판단하여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

- ① 신고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주변에 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즉시 사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 ② 신고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5) 가슴 압박

- ① 가슴의 중앙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꿈치를 대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포개어 깍지를 낡니다.
- ②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 ③ 성인 심정지의 경우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120회 유지합니다.
- ④ 압박 깊이는 약 5-6cm 유지합니다.
- ⑤ 압박 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 가슴 이완시킵니다.
- ⑥ 인공호흡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일반인 구조자에게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권고합니다.

2. 골절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 1) 골절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환부를 고정합니다.
- 2)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리려는 행동은 절대 금지 및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 3) 각목 등을 활용하여 골절된 부위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4) 골절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날 시 차가운 수건 또는 아이스팩으로 찜질합니다.
- 5) 골절로 인해 상처 발생 시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한 수건, 거즈를 사용해 지혈합니다.

3. 출혈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 1) 출혈 발생 시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를 직접 압박해서 지혈합니다.
- 2) 상처에 찢렸을 경우 추가 출혈 방지를 위해 찢린 물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 3) 상처를 심장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 4) 수술을 할 경우 전신 마취 시 마취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5) 지혈 중인 거즈나 수건을 제거할 경우 붙어있던 응고된 피가 같이 떼어지기 때문에 덧댄 거즈나 수건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저체온증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 1) 전신 떨림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 의식 저하 현상이 목격되거나 체온 측정 결과 35°C 이하일 시 저체온증 일 수 있습니다.
- 2) 저체온증 환자 발생 시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 3) 저체온증 환자가 젖은 옷을 입었을 경우 마른 옷으로 환복 하게 합니다.
- 4) 저체온증 환자에게 미지근한 물과 열량이 높은 음식을 소량씩 섭취 유도합니다.

제9장 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제15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장 및 대관단체 이행사항)

- 1. 정부 방역지침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장 및 대관단체 이행사항(별지)'을 현행화하여 공연단체와 공유합니다.

제10장 용어의 정의

제16조 (용어의 정의)

1.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불쾌감, 분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행뿐만 아니라 미묘한 언행으로 불편함, 스트레스, 불안, 공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2. '성폭력'이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을 매개로 개인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굴욕적인 창작 및 실연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함께 일하는 모든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무형의 힘으로 계급, 직위, 활동기간, 예술경력 등의 차이에서 형성한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내 '직장 내 괴롭힘'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표현을 따랐으며 본 규약 내 '직장'은 '공연의 제작 및 실연을 위해 모인 집단'으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장애, 언어, 종교, 민족, 사회적 출신,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재산 유무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5. '2차 피해'란 사건 발생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및 악의적인 언행으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말하며, 예를 들자면 회유나 협박, 포섭, 편 가르기, 묵인, 무시, 방조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제11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정

제17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공연을 제작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교육과 함께 사건 발생 시의 대응방법도 함께 교육받습니다. 교육은 아래에 제시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부록2 「성희롱·성폭력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서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별도 첨부된 「불편한 연극」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및 젠더온(genderon.kigepe.or.kr)내 영상자료를 시청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무료)을 신청하여 수강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위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shp.mogef.go.kr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서울) 사단법인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 02-3473-5531
 - (경기 북부) 에코 젠더 031-952-8052 / (경기 남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제18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1.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 1) 불편함을 드러낼 수 없는 분위기와 상황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말하는 태도, 감정상태, 평소 행실과 같이 논란의 본질을 피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 3)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4)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언어 사용 또한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5)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제기(미투 운동 등)를 농담거리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 6)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합니다.
 - 7) 외모, 복장, 성별, 나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평가하지 않습니다.
 - 8) 이성애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성적비하 발언이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게이같다'는 표현을 비정상적인 행동 묘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등)
 - 9)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10) 특정성별에 대해서 고정적인 역할이나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11) 성별에 따라 작업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 12) 성희롱과 친밀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작업 및 근로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 1) 공연제작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근거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체 내 성차별·위계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내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연단체는 공연의 제작 과정 및 실연 기간 동안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음
 - ② 성희롱·성폭력 가해행위자는 법적 책임을 지거나 프로젝트에서 하차할 수 있음
 -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계약 해지 결정의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음
 - ④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구성원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피해자 신상을 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됨
 - ⑤ 공연 단체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폭력적인 연기를 수행한 자에게 페널티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⑥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에 관한 차별과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음
 - 2) 피드백을 빙자한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을 금합니다.
 - 3) 탈의를 하는 행위는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상호 동의를 얻습니다.
 - 4) 신체접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연습 시 출연진 모두에게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5) 자세교정, 연기나 동작 지도 등을 핑계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금합니다.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협의합니다.

- 6) 예술을 빙자한 노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7) 작업하는 공간 외 자리에서 작업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 8) 동료의 사생활을 아는 것이 작업하는데 필요치 않음을 인식합니다.
- 9) 어떤 사안에 대해 설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되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 10) 작품의 성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나이, 경력을 떠나 자유롭게 문제제기 및 비평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 11)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즉흥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력과 같은 돌발행위가 무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12)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객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비하 발언, 혐오표현을 지양하며 관객 또한 제작진이나 출연자에 대한 외모평가나 혐오표현, 성적대상화를 지양합니다.
- 13) 연습 시 노출장면이 있을 경우 참관하는 구성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누가 참관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제12장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과정

제19조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공연을 제작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교육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도 함께 교육받습니다. 교육은 아래에 제시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부록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서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부록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를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위계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20조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1. 공연제작과 실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 1)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대화, 협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지위 또는 관계와 같은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 3) 서로의 역할 혹은 이름 뒤에 ~님 또는 정확한 지위를 붙이는 것으로 호칭을 통일합니다.
 - 4) 언어를 사용할 때 모두 같은 높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 5) 소통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아랫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 6) 성별, 장애유무, 나이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정도의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 7) 공연 제작과 실연을 위한 지시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문제상황이나 요구, 개선점에 대해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특정 대상 비하 발언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8)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9) 뒤풀이나 회식 등 업무 외적인 모임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이나 흡연, 음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10)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은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1)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 지시를 금합니다.
- 12)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대신 조언이 필요한 자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작업 분위기를 만듭니다.

제13장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사건발생 시 행동지침

제21조 (사건 발생 시 피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원칙)

1. 공연장 내 성폭력·위계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연장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합니다.
2. 공연장 구성원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실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주변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며 가해당사자와의 업무 및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당사자의 신변과 업무 환경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성폭력·위계폭력 피해당사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1) 파면,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승진 제한, 캐스팅 변경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직무 미부여 및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방지하는 행위
 - 5) 그밖에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6.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 관련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7. 모든 과정은 피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2조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_주변 구성원)

1.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가십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과정을 성실히 돕습니다.
2. 피해, 가해당사자에 대한 사적 판단을 지양하고 최대한 빠르게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조사와 수사 등의 전문 영역을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3. 선불리 가해당사자나 피해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4. 피해당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비난, 신상공유, 폭력적 발언은 자제합니다.
5. 외부 기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피해당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정을 돕고 창작 및 실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습니다.
6. 가해당사자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해당사자에게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다면 피해당사자에게 책임 있게 사과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7. 전형적인 피해자, 가해자가 없음을 인지하고 고정관념에 따라 가해당사자나 피해당사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8. 피해당사자의 책임을 절대 묻지 않으며 폭력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_피해당사자)

1. 사건인지 시 해당 피해당사자는 당장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건 경위를 글로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2. 경찰신고, 내부 해결, 외부 지원, 공론화 등의 해결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방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심리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24조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_가해당사자)

1. 나의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력·위계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2. 피해당사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합니다.
3.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도록 노력합니다. 피해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과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사과가 아니며, 사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반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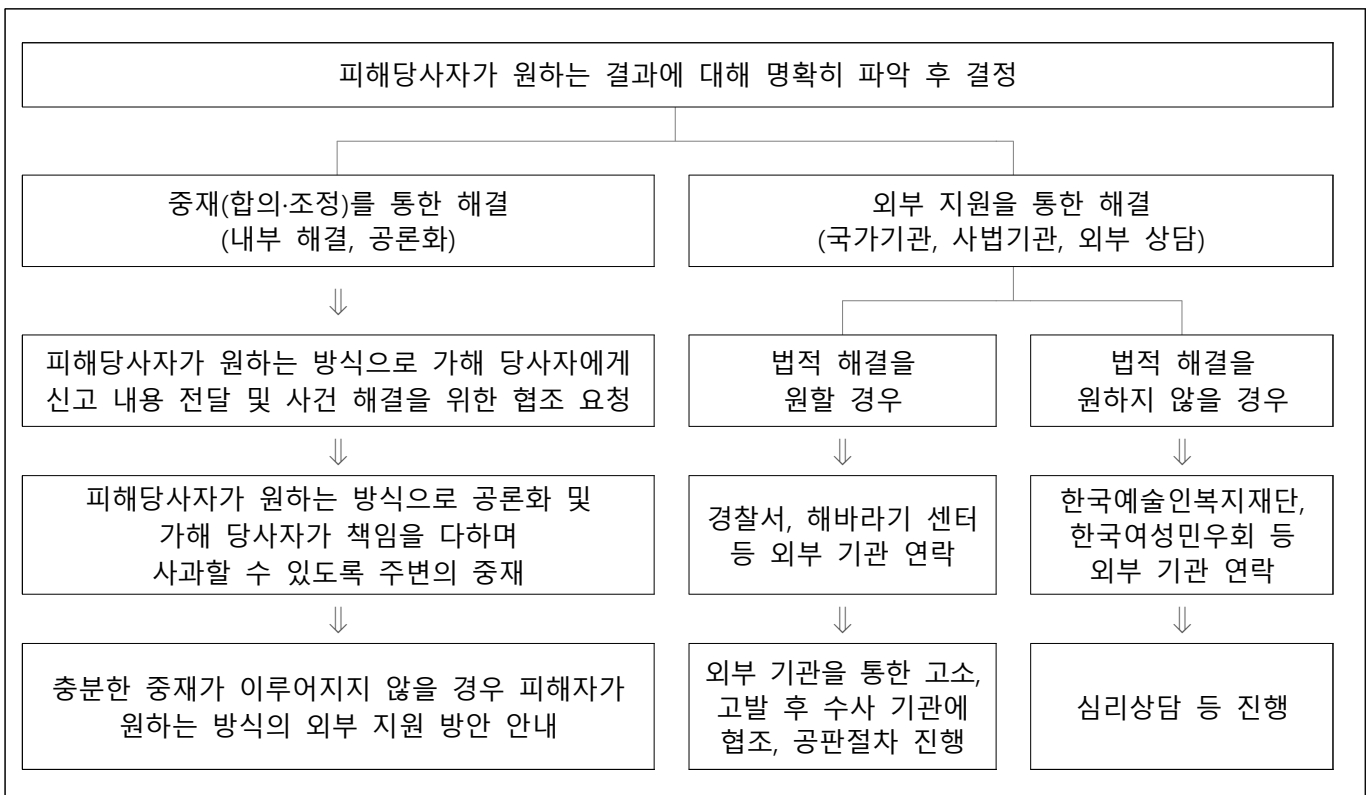
제14장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사건조사와 처리 방안

제25조 (사건조사와 처리 방안의 기본)

1. 공연장, 공연단체는 사건 발생 시 아래와 같은 해결방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26조 (사건 발생 시 피해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건 해결방식)

1. 피해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건 해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피해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중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 (전화,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 02-3668-0266, 02-1670-5678(3번)) (온라인 상담 : www.kawf.kr 내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withu@kawf.kr 로 상담 신청) (방문상담 : 예약제로 진행, 재단 내 상담실에서 상담.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10-15 소호빌딩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 센터 (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수사, 상담, 의료, 법률지원 - 서울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 1층 / 02-3672-0365 - 서울 중부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 02-2266-8276 - 서울 북부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 02-3390-4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 (전화상담 : 1670-5678) (온라인 상담 : bora.kocca.kr 내 비공개 게시판으로 상담 신청) (방문상담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중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전화,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 02-3668-0200) (온라인 상담 : www.kawf.kr 내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withu@kawf.kr 로 상담 신청) (방문상담 : 예약제로 진행, 재단 내 상담실에서 상담.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10-15 소호빌딩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등 연락처 부록2 참조

부록 1. 유관기관 연락처

유형	기관명	신고처	
긴급 지원	경찰서	국번없이 112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해바라기 센터	통합	전화번호 02-3672-0365
			홈페이지 http://help0365.or.kr/
		아동	전화번호 02-3274-1375
			홈페이지 http://www.child1375.or.kr/
	여성긴급전화		전화번호 1366
카카오톡 women1366			
홈페이지 mogef.go.kr/cc/wcc/cc_wcc_f001.do			
종합 지원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 02-735-7544	
		웹사이트 mogef.go.kr/msv/metooReport.do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 02-338-5801	
		홈페이지 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02-2263-6465	
		홈페이지 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02-335-1858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	전화번호 02-706-5050		
장애인 상담 지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02-3675-4465	
		웹사이트 http://www.kdawu.org/counsel/intro.php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 02-02-902-3356	
웹사이트 www.꿈누리.com			
청소년 상담 전문 지원	탁 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 02-3141-6191	
		웹사이트 www.tacteen.net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전화번호 02-2677-9220	
웹사이트 ahacenter.kr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 02-735-8994	
		웹사이트 d4u.stop.or.kr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전화번호 02-815-0382	
		웹사이트 www.onseoulSAFE.kr	

부록 2. 「성희롱·성폭력 체크리스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_성희롱 판단력 점검

* 출처 : 고용노동부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3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4	단 한 번의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다.		○
5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6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7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 외모와 관련된 성적비유(평가)를 동료에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8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9	회사 내 개인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0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1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12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3	성적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14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15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6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7	욕설이 특정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8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1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	○	
20	직장 내 성폭력은 형법 상 처벌될 수 있기에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		○

- ✓ (정답 18개 이상) 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 ✓ (정답 15~17개) 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 ✓ (정답 14개 이하) 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 해당 문항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로, 용어 및 내용을 각 단체 상황에 맞춰 수정할 수 있음

부록 3. 「직장 내 괴롭힘 체크리스트」

서비스업 근로자 스트레스 설문조사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	아니다
1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3	나에게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었다.		
4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5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6	나에게 업무 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나를 의사결정에서 제외했다.		
7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관련해 조롱하고 폭언했다.		
8	나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9	나에게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10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11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 사항이나 안전 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12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13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 던지기, 주먹질 등)		
14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15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6	(남성/여성)답게 옷차림을 하지 못한다는 등 외모와 관련된 지적이나 농담에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17	육아나 출산 등과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육아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의 무시하거나 비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8	이성 친구가 있는지, 또는 이러니까 이성 친구가 없지 등과 같이 연애, 결혼과 관련해서 무시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있다.		
19	여성만 응답, 손님 응대, 탕비실 정리, 청소 등 여자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더 잘한다며 여성 직원에게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20	직장에서 호칭을 제대로 부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21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따돌림당하거나 은밀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22	상대 성별인 부하가 상사인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23	나에게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24	나를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25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26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		
27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했다.		
28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29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 해당 문항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로, 용어 및 내용을 각 단체 상황에 맞춰 수정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인정 사례)	
<p>1.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경위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 회사 대표가 냉면 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함.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임. 직원들의 개인 사정은 상관없고 무조건으로 오라고 하면 가야하고, 거절하면 회사 생활을 힘들게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하여 어쩔 수 없이 불러 나갈 수밖에 없음. 실례로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한 적도 있음 -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함.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함 	
<p>2.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 	
<p>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본부 매니저는 기분에 따라 "능력 안 되면 몸뚱이라도 해야지 씨ㅇ~~", "씨ㅇ,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미친ㅇ 너네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라는 등의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함 - 지점장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엄청 이쁘고 날씬했었는데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연애하자" 등의 발언을 하고, 어린 여직원에게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음. 피해자는 지사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지점장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피해자는 신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함 	
<p>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강요하거나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발의 욕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 하면 대답 왜 안 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p>5.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혹은 소문을 퍼뜨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며 회사 내에서 말하고, "거래처에 회사 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함. 또한 인맥을 이용해서 애인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직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림으로써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함 	

※ 자세하고 추가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록 5. 참고자료

1. 공연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 국민재난안전포털(2020) www.safekorea.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2020) health.kdca.go.kr
-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2015)_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바로가기](#)
- 한국기술산업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_KTL www.stagesafety.or.kr
- 공연단체를 위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이용안내서(2021) [바로가기](#)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운영규정 및 공연 운영지침 [바로가기](#)

2.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020)_여성가족부 [바로가기](#)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2019)_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바로가기](#)
-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21)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이제는 알아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례20(2018)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제4회 올해의 강의 '비폭력과 공감의 길을 찾아서 스토리북'(2017)_여성가족부 등 [바로가기](#)
-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2017)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2016)_서울시 [바로가기](#)
-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2020)_KTS 워킹그룹 [바로가기](#)
- 극단 신세계의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위한 지침(안)(2019)_극단 신세계 [바로가기](#)
- 작업수칙(2019)_컬렉티브 텅굴 [바로가기](#)
- 불편한 연극 : 연극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불편한 장면들(2018)_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바로가기](#)
- 평등한 연극 제작 문화를 향한 질문/제안/다짐/규칙(2018)_페미씨어터,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바로가기](#)
- 평등한 공연 제작을 위한 작업 수칙(2018)_<우리가 고아였을 때> 제작팀 [바로가기](#)
- 작업에 앞서, 권리장전(2018)_극단 Y [바로가기](#)
- 성 평등 및 바람직한 연극문화를 위한 프로덕션 생활수칙(2017)_극단 문 [바로가기](#)

나가며

- 본 자치규약의 적용 기간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공연장 이용 종료 시까지로 하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결 시까지로 정합니다.
- 본 자치규약의 적용 범위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창작자와 극장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자치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그 관할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소재지(종로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공연단체는 본 내용을 참조 및 활용하여 단체 실정에 맞는 자체 자치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